

‘09년 상반기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 할당관세

- 기획재정부는 12월 23일 ‘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발표함
 - 현재 120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‘09년 상반기에 74개로 축소 운용
 - 금번 할당관세는 ‘09.1.1~‘09.6.30일 수입한 품목에 적용함

□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 할당관세 운용 계획

- 원유 : 현재 1% → ‘09.2월 2% → ‘09.3월 이후 3%
- 납사제조용 원유 : 현행 0% 유지
- LPG제조용 원유 : 현행 1% 유지
- 휘발·등·경·중유 : 현재 1% → ‘09.2월 2% → ‘09.3월이후 3%
- LPG : 현행 0% → ‘09.3월 부터 1%
- LNG : 현행 1% 유지
- PE : 한계수량內 0%, 한계수량外 6.5%
(한계수량 : LDPE/L-LDPE 14천톤, HDPE 3.7천톤)
- MEK : 현행 0%
- 기타 품목 : ‘08년 기본관세율 환원

- ※ 첨부 1.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의 할당관세 적용 추이 1부.
2. 기획재정부 「‘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시행」 보도자료 1부. 끝.

[첨부 1] 석유화학 원료 및 제품의 할당관세 적용 추이

(단위 : %)

	'08년 기본관세율	할당관세 변화				
		'08.1월~	'08.4월~ [1차 긴급]	'08.8월~ [2차 긴급]	'09.1~6월	비고
원유	3.0	1.0	~	~	2월 2%⇒3월이후 3%	
원유(납사제조용)	3.0	0.0	~	~	0.0	
원유(LPG제조용)	3.0	1.0	~	~	1.0	
휘발/등/경/중유	5.0	3.0	1.0	~	2월 2%⇒3월이후 3%	
LNG	3.0	1.0	~	~	1.0	
LPG	3.0	1.5	0.0	~	3월부터 1%	
아크릴로니트릴	6.5	3.0	~	0.0	6.5	기본관세를 환원
저밀도폴리에틸렌	6.5	4.0	~	0.0	0.0(14천톤)	한계수량 外 6.5%
고밀도폴리에틸렌	6.5	3.0	~	0.0	0.0(3.7천톤)	한계수량 外 6.5%
폴리프로필렌	6.5	5.0	~	0.0	6.5	기본관세를 환원
폴리스티렌(EPS포함)	6.5	6.5	4.0	~	6.5	기본관세를 환원
ABS	6.5	6.5	4.0	~	6.5	기본관세를 환원
메탄올	2.0	~	~	0.0	2.0	기본관세를 환원
이소노닐알콜	3.0	~	~	0.0	3.0	기본관세를 환원
이소데실알콜	3.0	~	~	0.0	3.0	기본관세를 환원
2-프로필헥틸알콜	5.0	~	~	0.0	5.0	기본관세를 환원
MEK	3.0	~	~	0.0	0.0	
무스트리멜리트산	6.5	~	~	0.0	6.5	기본관세를 환원

() : 한계수량

~ : 전기 결정세율(또는 기본관세율) 유효

보도자료

보도일시	2008.12.23(화) 10:30 이후		
배포일시	2008.12.22(월) 18:00	담당부서	세제실 산업관세과
담당과장	김종열(2150-4430)	담당자	진승하 서기관(2150-4431)

제목: '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시행

◇ 기획재정부는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* 적용품목을 '09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하여 운용할 계획임

*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의 40%p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

◇ '09년 상반기 할당관세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'08년에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두 차례('08.4, '08.8)에 걸쳐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여 확대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축소하되,

* 할당관세 품목수(개) : ('07년말) 39, ('08년말) 120, ('09년 상반기) 74

○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,* 소상공인·영세자영업자**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장·지원하였음

* 농약, 농약원재료, 비료, 비료원재료, 사료용곡물 등

** 생사·면사, 옥수수(가공용), 밀(제분용), 대두(식용유용) 등

○ 또한, 최근 가격이 급락*한 원유의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기본관세율로 환원하고, 이에 따라 여타 석유류의 관세율도 조정하였음

* 두바이유가격(\$/배럴) : ('08.7.4) 140.7 → ('08.12.19) 40.46

* 서부텍사스유가격(\$/배럴) : ('08.7.3) 145.29 → ('08.12.19) 33.87

- 원유 관세율의 단계적 인상 : (현재) 1% ~~(09.2월 2%)~~ ~~(09.3월 이후 3%)~~

- 휘발유·등유·경유·중유(현재1%)도 원유와 동일 세율로 인상

- LPG(현재0%)는 '09.3월부터 1%로 조정

- LNG는 현행 세율(1%)을 유지

※ 내년 3월 이후 원유(2%p), LPG(1%p) 관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는 약 10원/ℓ, LPG는 약 3원/ℓ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함

◇ 금번 할당관세는 '09.1.1~'09.6.30일 수입한 물품에 적용함

※ '09년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 : 별첨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첨 부

‘09년 상반기 할당관세 품목 및 할당관세율

	적용품목 및 세율
무 관세 품목 (36개)	매니옥 펠리트(사료용)(3), 보리(사료용 겉보리)(20), 귀리(사료용)(3), 옥수수(사료용)(1.8), 면실(사료용)(3), 알팔파(사료용)(1), 당밀(사료용)(3), 밀기울(사료용)(2), 대두박(사료용)(1.8), 면실박(사료용)(2), 호밀종자(녹비용)(3), 옥수수(가공용)(3), 커피 원두(2), 무수암모니아(1), 요소(2), 농약원재(2), 농약완제품(6.5), 합판제조용단판(3), 원피(1), 생사(3), 면사(4), 재생·반합성필라멘트사(2), 스테이플섬유(비스코스레이온, 리오셀) (2/4), 폴리에틸렌(6.5), 동박(8), 마그네시아(3), 코크스(3), 탄산이나트륨(4), 탄화규소(5), MEK(3), 페로실리콘(3), 디술폰산과 그 염(6.5), 페로크로뮴(3), 코발트분(3), 증착기(8), 납사제조용 원유(3) * ()내는 기본관세율(%) * PE 한계수량 : LDPE/L-LDPE 14,000톤, HDPE 3,700톤
낮은 관세율 품목 (38개)	매니옥 칩(사료용, 주정용, 전분당용)(20→6), 대두(탈지 및 대두박용)(5→4), 사료용 근채류(5→2), 동식물성 유지(사료용)(8→3), 비트펄프(사료용)(5→1), 주정박(사료용)(5→1), 면실피(사료용)(5→2), 유장과 변성유장(20→5), 매니옥전분(제지용)(9→4), 유당(20→10), 식물성경화유지(8→4), 밀(제분용)(1.8→1), 보리(맥주맥)(30→6), 맥아(30→8), 설탕(40→35), 밀가루(4.2→2), 카세인(8→3), 조주정(10→5), 향료(8→4), 동식물성유지(8→3), 대두유(바이오디젤용)(5.4→2), 휘발유(MTBE포함)(5/5.5→3), 등유(5→3), 경유(5→3), 중유(5→3), LNG(3→4), LPG(3→4), LPG제조용 원유*(3→1), 자전거(8→5), 유연처리원피(5→2), 고무사(8→4), 견사(8→4), 견방사(8→4), 철분(5→2), 신호용유리제품(8→3), 멜라민(6.5→1), 건식식각기(8→3), 금속규소(5.5→1), 중밀도섬유판(8→5) * ()내는 (기본관세율 → 09년 할당 관세율)